

특조법에 따른 긴급사태조치 관련 오키나와현 대처방침

실시내용

정부의 긴급사태조치구역 추가를 바탕으로, 이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자, 사람과 사람의 접촉 기회를 철저히 줄이기 위해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(이하 “법”이라고 한다.) 제45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현민·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 요청을 실시함.

구역

오키나와현 전역

기간

2021년 5월 23일(일)~6월 20일(일)

【현민 및 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】 법 제24조 제9항 : 협력요청
법 제45조 제1항 : 긴급사태조치로서의 요청

외출자제요청

◆ **낮 시간도 포함해 불필요한※외출과 이동을 자제할 것. 특히 20시 이후의 외출을 피할 것**
(법 제45조 제1항)

※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으로의 통원, 의료·의약품·생활필수품의 구매, 필요에 의한 출근, 야외에서의 운동이나 산책 등, 생활과 건강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 주십시오.

◆ **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이더라도,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 행동할 것**
장보기는 대표로 1명이 가는 등 혼잡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(법 제45조 제1항)

◆ **도도부현간의 이동·왕래는 자제할 것** (법 제 45조 제 1항)
온라인 회의 등을 활용해 출장은 삼갈 것.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PCR 검사를 받고, 현지에서의 회식을 피할 것. 오키나와에 돌아온 뒤 신속하게 PCR 검사를 받으며 1주일 동안은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식사 자리를 피할 것

◆ **이도(離島)와의 왕래는 자제할 것** (법 제45조 제1항)
※의료기관으로의 통원, 식료·의약품·생활필수품의 구매, 필요에 의한 출근 및 백신 접종 등 이에 준하는 것을 제외하고, 이도와의 왕래는 삼가 주십시오.

◆ **계모임, 비치 파티 등 식사로 이어지는 행사 등은 자제할 것** (법 제24조 제9항)
식사로 인한 감염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. 또한 야외 바베큐 모임에서의 감염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므로, 이 기간은 식사로 이어지는 행사를 자제하도록 부탁드립니다.
※현 내 거주자는 법 제24조 제9항에 따라, 현민과 같은 내용으로 협력해 주시길 요청합니다.

요청내용

【현민 및 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】 법 제24조 제9항 : 협력요청
 법 제45조 제1항 : 긴급사태조치로서의 요청

요청내용

식사시의 요청

- ◆감염방지대책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음식점이나 휴업 요청 또는 영업시간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등의 이용을 철저히 피할 것 (법 제 45조 1항)
 또한, 기간 중에는 시간에 관계 없이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으므로, 점포에 주류 제공을 요구하거나 주류를 가게로 반입하지 말 것
- ◆노상·공원 등에서 단체로 음주하는 등,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피할 것
 (법 제45조 제1항)
- ◆회식은 함께 사는 가족과 소수 인원으로 짧은 시간 동안 실시하며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음식점의 이용을 자제할 것 (법 제24조 제9항)
 (감염방지대책 미실시 예 : 점원이 마스크 미착용, 손 소독용 설비가 없음, 환기가 잘 안됨, 자리 간격이 좁음, 아크릴 판 미설치, 입점 시 체온검사·마스크 착용 요청이 없음)
- ◆음식점이 요구하는 감염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(법 제24조 제9항)
 체온검사, 마스크 착용, 손 소독, 간격을 둔 자리 등 점포가 요구하는 감염방지대책에 협력해 주십시오.

오키나와현 의료비상사태선언 (법 제24조 제9항)

- 불필요한 구급검진은 삼갈 것
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엔 진료소 등 주치의에게 검진 받기, 발열시엔 현 콜센터를 이용
 <오키나와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콜센터 : 098-866-2129>
 - 매일 체온 검사 등으로 건강을 관찰해,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, 통근, 통학, 외출하지 않을 것
- ※현 내 거주자에게는 법 제 24조 제 9항에 따라, 현민과 같은 내용의 협력을 요청합니다.

【방문자 여러분께】

기 간

2021년 5월 23일(일)~6월 20일(일)

협력내용

방문 자제

◆타 현에서의 방문(귀성을 포함)은, 긴급사태조치기간 중에는 자제해 주십시오

필요에 의해 부득이 방문하게 된 경우에는, 오키나와현 입역 전에 PCR 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아 주십시오. 또한, 방문 전에 검사를 받지 못한 분은 나하공항 도착 시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“NPAA”를 도입하였으므로,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.

또한, 오키나와에 오신 뒤 현민과 식사하는 등의 접촉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.

※방문자 또한 현 내에서는 거주자로서 법 제24조 제9항에 의해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.
낮 시간을 포함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, 특히 20시 이후의 외출은 삼가 주십시오.

【음식점에의 요청】

법 제24조 제9항 : 협력요청 법 제45조 제2항 : 긴급사태조치로서 요청

기 간	2021년 5월 23일(일)~6월 20일(일)
대상시설	〔음 식 점〕 음식점 (배달 · 포장을 제외) 〔유흥시설 · 결혼식장 등〕 바, 노래방 · 결혼식장 등 식품위생법 상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포 및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노래방 점포
요청 · 협력 의뢰내용	<p> 【주류 또는 노래방 설비를 제공(이용자가 주류를 점내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음식점 포함)하는 음식점(주류 및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) 및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노래방 점포】 ◆휴업요청(주류 · 노래방 설비 제공 정지)(법 제45조 제2항) 【상기 이외의 음식점(배달 · 포장을 제외)】 ◆영업시간단축요청 5시부터 20시까지(주류 · 노래방 설비 제공 정지)(법 제45조 제2항) </p> <p> ◆다음 감염방지대책을 실시(법 제45조 제2항) · 종업원 검사 장려 · 입장자 정리 · 유도 · 발열 및 기타 증상이 있는 자의 입장을 금지 · 손 소독 설비 설치 · 사업을 행하는 장소의 소독 · 마스크 착용 외 감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알림 ·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방지조치에 응하지 않는 자의 입장 금지(퇴장을 포함) · 시설 환기를 행함 · 아크릴판 등의 설치 또는 1m 이상 거리를 확보 </p> <p> ◆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(법 제24조 제9항) ◆현이 실시하는 감염방지대책 추진 순회사업에 협력 (법 제24조 제9항) ◆결혼식장은, 음식점과 같은 내용의 요청에 따를 것.(법 제45조 제2항) 또한 가능한 한 1.5시간 이내로, 소수 인원 (50명 또는 50% 중 적은 쪽)으로 개최할 것(부탁) </p> <p> ※요청에 협력한 사업자에게는 협력금을 지급 </p>

【행사 개최시의 요청 · 부탁】

법 제24조 제9항 : 협력요청

기 간

2021년 5월 23일(일)~6월 20일(일)

※5월 22일-24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며, 늦어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. 계도기간 종료 전에 판매가 시작된 티켓은 최대수용인원 5,000명 이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.

요청내용

- ◆ **전국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행사 또는 대규모 행사(1,000명 이상)는, 연기 또는 중지를 요청**(무관객 · 온라인 개최의 경우는 제외)(법 제24조 제9항)
- ◆ **최대수용인원 1,000명 이하 행사는 수용률 50% 이내로 개최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, 무관객 · 온라인 개최 · 규모 축소 · 분산개최를 검토할 것**
또한,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연기 또는 중지를 요청
(법 제24조 제9항)
- ※ 각종 시험, 채용활동 등 온라인 개최가 곤란하며 연기 또한 어려운 행사는 최대수용인원 5,000명 이내 및 수용률 50% 이내로 한다.

행사
실시 시
유의사항

- ◆ 주류를 제공(이용자가 주류를 점내로 반입하는 것을 포함)하지 않을 것(부탁)
- ◆ 영업시간은 21시까지(무관객으로 개최되는 프로그램을 제외) (법 제24조 제9항)
- ◆ 행사 개최에 있어서,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(법 제24조 제9항)
- ◆ 프로그램 전후의 3밀(3密) 및 회식 회피를 위한 방안을 철저히(법 제24조 제9항)
- ◆ 정부 접촉확인앱(COCCA) · 오키나와현 신종 코로나 대책 퍼스널 서포트(RICCA) 도입, 방문자 명부 작성 등 추적대책을 철저히(법 제24조 제9항)

기간	2021년 5월 23일(일)~6월 20일(일)
요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직장 출근에 대해, 재택근무(텔레워크)를 활용하거나 휴가 취득 촉진 등으로 출근자수의 70% 삭감을 목표(부탁) ◆ 직장으로 출근하는 경우에도 시차출근, 자동차 통근 등 사람과의 접촉을 저감하는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(부탁) ◆ 20시 이후의 불필요한 외출을 철저히 자제할 것과 동시에,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시 이후의 근무를 억제(부탁) ◆ 직장이나 점포 등에서 업종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감염방지대책을 실시할 것(법 제24조 제9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업원의 컨디션 관리를 철저히 하며,(출근시의 체온 검사 등) 컨디션이 좋지 않은 직원은 쉬게 할 것 · 휴식장소나 식사장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재점검 · 사원 기숙사 등 공동생활에서의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할 것 · 사업소의 환기에 힘쓸 것 ◆ <u>자사의 종업원에게 휴업 요청 · 영업시간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구</u> (법 제24조 제9항) ◆ <u>회의, 집회, 설명회, 연수, 학회 등의 개최를 연기 · 온라인 · 규모 축소 · 분산개최 할 것</u> (법 제24조 제9항) ◆ 자사의 종업원에게 친목 모임, 계모임, 비치 파티 등을 삼가도록 요구할 것 (법 제24조 제9항) ◆ 야외조명(범죄대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제외)을 야간에 소등할 것(부탁)

※실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표해 주십시오

【교통사업자에의 요청 · 부탁】

요청 · 협력 의뢰내용

- ◆ 주요 터미널에서 체온 검사를 실시할 것 (부탁)
- ◆ **항공, 선박, 버스, 택시 등 대중교통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정해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 (법 제24조 제9항)**

【각 시정촌과의 연계 방침을 실시】

의뢰내용

- ◆ 방재무선, 홍보차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에게 감염방지대책을 홍보, 자치회 등에 협력 의뢰
- ◆ 음식점 등의 순회(감염방지대책 부탁, 휴업요청 · 영업시간단축요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력히 요청)
- ◆ 각종 시설, 공원 등의 관리자로서 노력(노상, 공원에서 단체로 음주하는 것 등에 대해 주의 환기 하는 것을 포함)
- ◆ 발열시의 의료검진방법을 홍보(불필요한 구급검진 억제, 오키나와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콜센터 098-866-2129)

【학교에의 요청】

법 제24조 제9항 : 협력요청

<p>기 간</p>	<p>2021년 5월 23일(일)~6월 20일(일)</p>
<p>요청내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위생관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 활동, 학생 기숙사에서의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(법 제24조 제9항) ◆ 학교행사(운동회, 체육회, 수학여행이나 숙박학습 등)을 연기, 축소 (법 제24조 제9항) ◆ 현립학교에서는 통학시의 밀(密)을 피하기 위해, 각 학교의 실태에 맞추어 시차등교를 검토 (법 제24조 제9항) ◆ 유아 아동 학생은 통학 이외의 불필요한 외출을 철저히 자제하며, 발열 등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(법 제24조 제9항) ◆ 학급폐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온라인 등을 활용해, 학습을 보장한다. (법 제24조 제9항) ◆ <u>부활동은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u> 단, 8월 말까지 개최되는 규슈·전국대회 예선을 겸한 현 내 대회나 콩쿠르 등에 출전하는 경우에 한해, 평일 90분 이내(아침 연습은 불가), 주말 및 공휴일 2시간 이내의 활동을 필요최소한의 인원수로 행한다.(법 제24조 제9항) ◆ 대학, 전문학교 등은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, 어려운 경우에는 분반 수업이나 큰 교실을 활용하는 등 밀(密)을 피한다 (법 제24조 제9항) ◆ 대학은 학생들에게 아래의 행동을 철저히 자제하도록 주의를 줄 것 (법 제24조 제9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휴업·영업시간단축이 요청된 음식점 등에 출입하는 것 · 다수 인원이 함께 행동하는 것이나, 바베큐 또는 친구의 집에서 음주하는 것

【음식점 이외의 시설에의 요청 · 협력 의뢰 ①영업시간 단축 요청 대상 시설】 법 제24조 제9항 : 협력요청

기 간	2021년 5월 23일(일)~6월 20일(일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요청 · 협력 의뢰 내용	대상시설 (특조법시행령 제11조)	상세 내용	요청 · 협력의뢰내용
	극장 등(제4호)	극장, 관람장, 영화관, 연예장, 천체투영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5시부터 21시까지로 단축(법 제24조 제9항) ■ 최대수용인원 5,000명 및 수용률 50% 이내(법 제24조 제9항) ■ 입장자 정리유도 등을 철저히 할 것(법 제24조 제9항) ■ 정리유도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것(부탁) ■ 주류 및 가라오케 설비를 제공(이용자가 주류를 점내로 반입하는 것을 포함)하지 않을 것(부탁) ■ 영화 상영은 행사와 같이 취급하여 21시까지로 단축(1,000㎡초과는 법 제24조 제9항) ■ 행사 개최 이외의 경우에는 20시까지로 단축(1,000㎡초과는 법 제24조 제9항) ■ 결혼식을 행하는 경우에는, 음식점과 같은 요청에 따른 것(법 제45조 제2항) 가능한 한 짧은 시간(1.5시간 이내), 소수 인원(50명 또는 50% 중 작은 쪽)으로 개최할 것(부탁)
	집회장 또는 공회당(제5호)	집회장, 공회당	
	전시장(제6호)	전시장, 대여회의실, 문화회관, 다목적 홀	
	호텔 또는 료칸(모임을 위해 제공하는 부분에 한함)(제8호)	호텔 · 료칸(모임을 위해 제공하는 부분에 한함)	

【※1,000㎡을 초과하는 시설 중, 특조법에 따른 영업시간단축 요청에 협력한 사업자에게는 협력금을 지급】 (기타 보조 메뉴가 있는 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.)

【음식점 이외의 시설에의 요청 · 협력 의뢰②영업시간 단축 요청 대상 시설】 법 제24조 제9항: 협력요청

기 간	2021년 5월 23일(일)~6월 20일(일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요청 · 협력의뢰 내용	대상시설(특조법시행령 제11조)	상세 내용	요청 내용
요청 · 협력의뢰 내용	상업시설 (생활필수물자를 제외) (제7호)	대규모 소매점, 쇼핑센터, 백화점(식품, 의료품, 의약품, 잡화, 연료 등 생활필수물자를 제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(바닥면적 1,000㎡ 초과 시설)영업시간을 5시부터 20시 까지로 단축(법 제24조 제9항) ■(바닥면적 1,000㎡ 이하 시설) 영업시간을 5시부터 20시까지로 단축(부탁) ■입장자의 정리유도 등을 철저히(법 제24조 제9항) ■정리유도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것(부탁) ■주류 및 가라오케 설비를 제공(이용자가 주류를 점내로 반입하는 것을 포함)하지 않을 것(부탁) ■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21시까지로 단축(법 제24조 제9항) ■정부의 사무연락에 따라, 운동 · 유희시설(제9호) 중 일부, 박물관, 미술관 등(제10호)은 최대수용인원 5,000명 및 수용률 50% 이내로 요청
	운동 · 유희시설(제9호)	체육관, 스포츠클럽, 빠칭코 가게, 게임 센터 등	
	박물관, 미술관 등 (제10호)	박물관, 미술관 등(도서관을 제외)	
	유희시설(제11호)	성풍속점, 데리헤루, 비디오방, 라이브하우스, 장외마(륜 · 정)권장	
	서비스업(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외)(제12호)	대형 대중목욕탕, 에스테틱 살롱, 사진관 등(미용실, 세탁소, 부동산 등 생활필수서비스를 제외)	

【※1,000㎡를 초과하는 시설 중, 특조법에 따라 영업시간단축 요청에 협력한 사업자에게는 협력금을 지급】(기타 보조 메뉴가 있는 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.)

【 음식점 이외의 시설에의 요청 · 협력 의뢰③ 】

법 제24조 제9항 : 협력요청

기 간	2021년 5월 23일(일)~6월 20일(일)	
요청 · 협력의뢰 내용	대상시설(특조법시행령 제11조)	요청 · 협력의뢰
	보육소, 간호노인보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(제2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제한(부탁) · 적절한 감염방지대책 협력을 요청(법 제24조 제9항)
	장례식장(제5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류제공(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포함)을 중지(부탁)
	도서관(제10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입장자의 정리유도를 철저히 (법 제24조 제9항)
	인터넷 카페 · 만화 카페※, 대중목욕탕, 미용실, 전당포, 의상대여점, 세탁소 등(제12호) ※인터넷 카페 · 만화 카페 중 야간 장기 체류가 목적인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입장자의 정리유도를 철저히(법 제24조 제9항) · 점포에서의 <u>주류제공정지</u> (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포함) 및 노래방 설비의 사용 자제(부탁)
자동차교습소, 학원, 영어회화교실, 음악교실 등 (제13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온라인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(부탁) 	

공공시설	<p>■ <u>현립시설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. 시정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요청한다.</u></p>
------	--